

의안번호	2205780
의 퇴 인	천하람 의원
회 답 일	2024. 11. 26.
추계번호	24F5303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5조의8 (출판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)	○ 출판콘텐츠(수험서, 참고서 등 학습 목적의 출판콘텐츠 제외)를 제작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작비용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- 공제적용 시점: 해당 콘텐츠가 처음으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과세연도 - 공제율(%): 중소기업 30, 중견기업 20, 대기업 10 - 적용기한: 2029.12.31.	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5조의8 (출판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기업의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경우, 법인세 및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(안 제25조의8 신설)
- 공제대상: 출판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
 - 단, 출판콘텐츠 중 수험서, 참고서 등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출판콘텐츠는 제외
 - 공제적용 시점: 해당 콘텐츠가 처음으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과세연도
 - 공제율(%): 중소기업 30, 중견기업 20, 대기업 10
 - 적용기한: 2029.12.31.까지

□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출판콘텐츠 제작기업의 기업 규모별로 향후 공제대상이 되는 콘텐츠 제작비 추이 등을 추정하여야 하나, 자료의 부재 등으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음

- 개정안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출판콘텐츠의 구체적인 범위 및 제작비용의 계산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공제대상이 되는 분야와 제작비용 규모 등에 대해 예측할 수 없음
- 또한, 출판콘텐츠 제작비와 관련된 통계가 부재하여 향후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 - －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「콘텐츠산업조사」에는 각 출판관련 산업내 세부 업종별 사업체수, 종사자수, 매출액 등 규모와 관련된 자료는 존재하나, 제작비용 등 개정안의 세수효과 추계에 필요한 자료는 부재

※ 참고로, 2022년 기준 출판관련 산업의 세부업종별 규모 현황은 다음과 같음

[표 2] 출판관련 산업의 세부업종별 규모 현황: 2022년 기준

기술종류		사업체수(개)	종사자수(명)	매출액(억원)
출판업	일반서적 출판업(종이매체출판업)	6,771	17,612	24,229
	교과서 및 학습서 출판업	1,685	14,651	26,970
	인터넷/모바일 전자출판제작업	275	2,816	8,319
	신문 발행업	1,113	15,981	27,485
	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	1,991	10,414	12,126
	정기 광고간행물 발행업	388	3,351	3,706
	기타 인쇄물 출판업	1,231	3,244	7,024
	소계	13,454	68,059	109,857
인쇄업	인쇄업	11,718	53,340	46,944
출판 도소매업	서적 및 잡지류 도매업	2,872	11,473	88,393
	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	5,974	16,669	36,400
	소계	8,846	28,143	51,992
온라인출판유통업	인터넷/모바일 전자출판서비스업	68	1,056	6,418
출판임대업	서적임대업(만화제외)	566	987	305
합계		34,652	151,594	251,917

자료: 문화체육관광부, 「2022년 기준 콘텐츠산업 통계조사」, 2024.3.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박정환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정환	02-6788-4835	jhpark83@assembly.go.kr